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12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김문수 · 김현정 · 박균택
신정훈 · 이광희 · 한준호
민병덕 · 김우영 · 양부남
김남근 · 한창민 · 이언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는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76배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실제소득”을 “그 밖에 실제 소득”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얻는 근로 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료급여”를 “그 밖에 의료 급여”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 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 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 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 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실제소득----- ----- ----- -----.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의료급 여 수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하여 의 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③ <u>의료급여</u>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u>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 여 수급권자로 본다.</u> ④ <u>그 밖에 의료급여</u>----- -----.
--	---